

2026년 청년·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「2026년 청년·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3일

대전광역시장

【 유형별 자격조건 및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청년유형은 **공고문 1쪽부터**, 청년부부 유형은 **공고문 7쪽부터**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】

I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
- 신청기간 : 2026년 2월 19일 ~ 11월 30일까지 / 상시 접수
 - ※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 제한(20건),(09:00~24:00, 평일 신청, 주말·공휴일 신청 불가)
 - ※ 예산 규모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
- 사업대상 : 보증신청일 기준 만 19 ~ 39세의 미혼 청년
- 사업내용 : 전세자금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
 -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-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은 금융기관(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)의 대출(보증)심사, 신용평가,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최초 대출실행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함
 -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_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1% (대출실행일 준)
 - ※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.5%
 - ※ 본인부담금리 = 대출금리 - 이차보전금리
 -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)
 -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 - 대출용도 : 주택임차보증금 마련
 -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*, 최장 6년 이내)
 - *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하며 금리는 연장시점 금리 적용

2. 자격요건

- 신청대상자 :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· 재직하는 만 19 ~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차계약 예정자

(1) **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** 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-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
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

(2) **취창업자 :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** 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-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

○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
○ 소득산정 기준

- 세전 소득 기준 : 원천징수영수증 16번(계), 21번(총급여) 항목 참조
- 소득 산정 시 성과급, 제수당 등도 포함

○ 중복지원 제외 대상자

-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, 청년월세 지원사업(대전형, 국토부형)을 이용중인 자
-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*
-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
-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

(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, 버팀목/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중인 자는 지원 제외)

* 2026년 공고 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되며, 소급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.

* 기타 중복지원사업에 관한 문의: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(☎042-719-8431)

< 유 의 사 항 >

***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**

- 동일유형 기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
-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유형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.
- 본 (청년)유형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청년부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나, 사업신청일 이후 **신규 계약만 해당**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- 신청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
□ 대상주택

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* 5.0% 이하의 반전·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
*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3.0% + 대통령령이 정한 2.0%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)

* 전월세 전환율 5.0% 적용 예시

<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 >

○ 예시 : 월세가 50만원, 보증금이 50,000,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

-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

= [(500,000원×12개월) ÷ 0.050] + 50,000,000 = 170,000,000원

※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'전월세전환율 계산기' 검색하여 계산 가능

※ 주거용 오피스텔은 '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'에 '주거용'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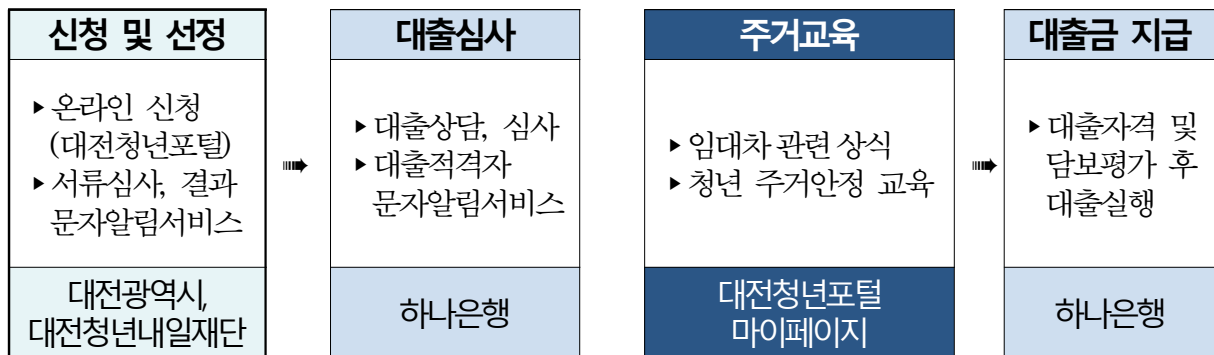
○ 제외 주택
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
- 임대인이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인 경우·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

- 공공임대주택(행복주택, (중양,지자체)임대·매입주택 등)의 경우 지원 불가

* 단, 신청 당시 해당주택에 거주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

3. 사업절차 /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



※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개인신용도/소득유무/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-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,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

4. 신청 및 선정방법

- 신청방법 : 대전청년포털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>)에서 온라인 신청
 - ※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·촬영(PDF 또는 JPG파일)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(압축해제 및 암호 해제)
 - 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전 서류의 식별가능여부 등 확인 후 제출 바람
- 선정방법 :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일(서류보완일)로부터 7일 내외 선정
 - ※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,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- 선정결과 알림 :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통보
 - ※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,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
 -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사업 신청 불가
 - 단,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
 - *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>)에서 포기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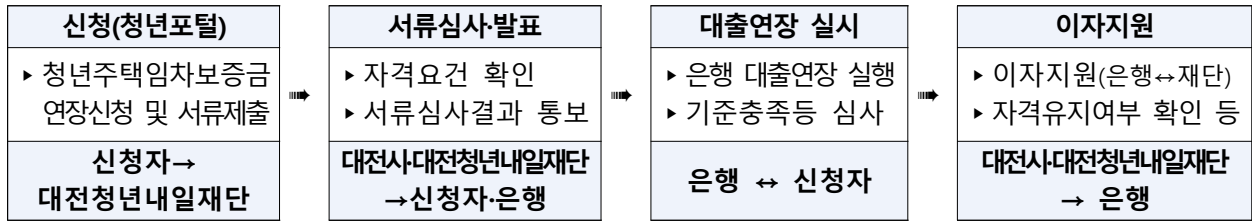
5. 연장신청

- 연장신청 : 전·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>)에 연장신청 및 연장 신청 시점의 공고문에 따른 서류제출
 - 연장신청은 동일유형 내에서만 가능
 -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
 - 연장신청 서류심사 승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연장 진행
 - 만기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,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
- 연장조건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

-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
-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
- ③ 나이,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
- ④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
- ⑤ **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 상환**

※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

○ 연장 절차



6. 제출서류

○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

구분		비고	
필수 제출 서류	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▶ 대전청년포털(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) 온라인작성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지원신청자의 무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일괄작성	
	주민등록등본	▶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 (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)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▶ 발급대상자 : 본인(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 (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)	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▶ 조회조건 :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▶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	
대상별 추가 서류	대학 (원)생, 취업 준비생	재학증명서	▶ 휴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
		사실증명원 (2025년 귀속분)	▶ '소득신고 사실없음' 사실증명원 ※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
		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(2025년 귀속분)	▶ 부모 모두 제출 ▶ 부모의 이혼·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 *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
	취· 창업자	재직증명서	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
사업자등록증		▶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(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)	
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2025년 귀속분)		▶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025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 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감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(입사일부터 신청일까지) ※ 회사 직인 필수 ,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 ▶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4~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※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 ▶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※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	
※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※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(6개 지점)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			

7. 선정취소 및 지원중단 사유

□ 선정취소 사유

-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**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**

- | |
|--|
|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
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|
|--|

□ 지원중단 사유

대출기간 중	기한연장 시
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타 주거지원정책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(목적물 변경 제외)	※ 연장신청 시점 공고문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39세 초과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출 기간 중 이차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

-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차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이차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,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.

8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,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사업문의	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
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☎ 042-719-8431 대전광역시콜센터 ☎ 042-120	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☎ 621-1111, 갈마동지점 ☎ 522-1111 오정동지점 ☎ 632-1111, 유성구청지점 ☎ 863-1111 대흥동지점 ☎ 253-1111, 가오동지점 ☎ 721-1111

- ※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II 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- 신청기간 : 2026년 2월 19일 ~ 11월 30일까지
 - ※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(20건)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 - ※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(09:00~24:00, 평일 신청, 주말·공휴일 신청 불가)
- 사업대상 : 보증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 ~ 39세인 청년부부
- 사업내용 : 전세자금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
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-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은 금융기관(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)의 대출(보증)심사, 신용평가,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최초 대출실행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함
 -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 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1% (대출실행일 기준)
 - ※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3.75% (청년부부 3.0%, 자녀수에 따라 0.25~0.75% 추가지원)
 - ※ 본인부담금리 = 대출금리 - 이차보전금리
 -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)
 -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 - 대출용도 : 주택임차보증금 마련
 -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*, 최장 6년 이내)
 - *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하며 금리는 연장시점 금리 적용

2. 자격요건

- 신청대상부부 :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· 재직하는 만 19 ~ 39세의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차계약 예정 부부

○청년부부 : 우리 시에 정착하려는 청년 부부

- 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부부
-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
- ③ 부부 모두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·재직중 이어야 함
- ④ 부부 모두 만 19~39세이어야 함

○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
○ 소득산정 기준

- 세전 소득 기준 : 원천징수영수증 16번(계), 21번(총급여) 항목 참조
- 소득 산정 시 성과급, 제수당 등도 포함

○ 제외 대상자 (본인 및 배우자 모두 확인)
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수급중인 부부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이거나 또는 실행하였던 부부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년월세 지원사업(대전형, 국토부형)을 이용중인 부부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부부
-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
 - * 대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, 버팀목/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중인 부부는 지원 제외
 - * 기타 중복지원사업에 관한 문의: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(☎042-719-8431)

< 유 의 사 항 >

***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**

- 동일유형 기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
-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유형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.
- 본 유형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청년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나,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- 신청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
□ 대상주택

○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* 5.0% 이하의 반전·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
*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3.0% + 대통령령이 정한 2.0%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)

* 전월세 전환율 5.0% 적용 예시

<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 >

○ 예시 : 월세가 50만원, 보증금이 50,000,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

-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
 = [(500,000원×12개월) ÷ 0.050] + 50,000,000 = 170,000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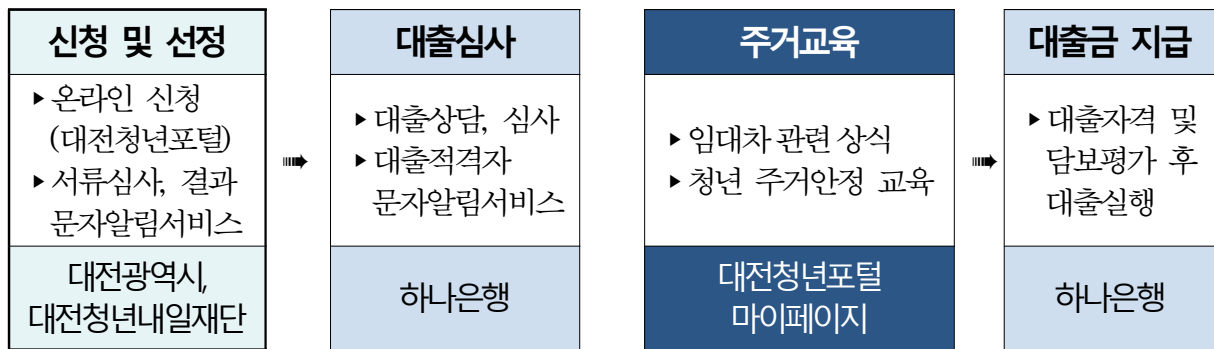
※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'전월세전환율 계산기' 검색하여 계산 가능

※ 주거용 오피스텔은 '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'에 '주거용'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

○ 제외 주택
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
- 임대인이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인 경우·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
- 공공임대주택(행복주택, (중앙,지자체)임대·매입주택 등)의 경우 지원 불가
- * 단, 신청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

3. 사업절차 /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



- ※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개인신용도/소득유무/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-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,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**대출 상담을 받은 후**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**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**

4. 신청 및 선정방법

- 신청방법 : 대전청년포털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>)에서 온라인 신청
 - ※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·촬영(PDF 또는 JPG파일)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(압축해제 및 암호 해제)
 - 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전 서류의 식별가능여부 등 확인 후 제출 바람
- 선정방법 :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일(서류보완일)로부터 7일 내외 선정
 - ※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,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- 선정결과 알림 :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통보
 - ※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,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
 -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사업 신청 불가
 - 단,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
 - *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>)에서 포기신청

5. 제출서류

-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

구 분		비고
필수 제출 서류	지원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전청년포털 (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) 온라인작성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지원신청자 의무 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일괄 작성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
	주민등록등본	▶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▶ 발급기준 :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)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▶ 조회조건 :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/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
추가 서류	재학증명서/재직증명서	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
	사업자등록증	▶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(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)
	사실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2025년 귀속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부 모두 제출 ▶ 소득이 없는 경우 ‘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’ 제출 ▶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5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(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) ▶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4~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▶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※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배우자)	▶ 홈페이지 양식 출력 후 배우자 서면동의 하여 스캔 첨부
	자녀 출생확인서	▶ 자녀가 있는 경우
	임신사실 확인서	▶ 태아인 자녀가 있는 경우
※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※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(6개 지점)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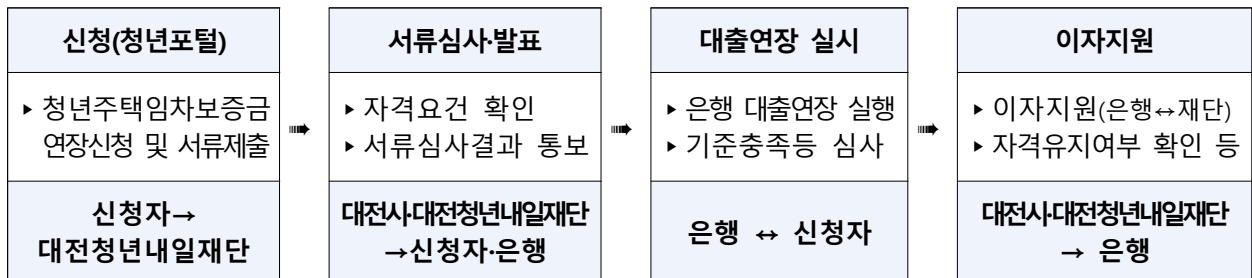
6. 연장신청

- 연장신청 : 전·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
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>)에 연장
신청 및 연장 신청 시점의 공고문에 따른 서류제출
 - 연장신청은 동일유형 내에서만 가능
 -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
 - 연장신청 서류심사 승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연장 진행
 - 만기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,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
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
- 연장조건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

-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
-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
- ③ 나이,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
- ④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
- ⑤ **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 상환**

※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

○ 연장 절차



7. 선정취소 및 지원중단 사유

□ 선정취소 사유

-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**용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**

-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차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

□ 지원중단 사유

대출기간 중	기한연장 시
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타 주거지원정책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(목적물 변경 제외)	※ 연장신청 시점 공고문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39세 초과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

-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,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.

8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,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사업문의	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
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☎ 042-719-8431 대전광역시콜센터 ☎ 042-120	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☎ 621-1111, 갈마동지점 ☎ 522-1111 오정동지점 ☎ 632-1111, 유성구청지점 ☎ 863-1111 대흥동지점 ☎ 253-1111, 가오동지점 ☎ 721-1111

※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